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개념 및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계획 등의 수립·변경(안 제2조-제6조)

-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수립 시로부터 6개월 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절차(안 제7조-제8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의 협의·조정 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 기간(30일)을 정함

다.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안 제9조, 별표1)

- 국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200개의 중·장기 행정계획으로 구체화함

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국가 보고서 작성(안 제10조-제1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통계청장 협의 및 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함

마.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1조)

○ 국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을 추가하여 정함

바.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안 제22조)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

사.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안 제23조)

○ 숙의공론화장 운영 방법 등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시행령 제정안 2) 입법예고 예정(4.29~6.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29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숙의공론화장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가기본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출기한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

⑤ 정부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본전략을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

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의 세부 구성 및 내용, 소관 부처 등의 사항의 일부 변경
2. 법 제7조제3항제5호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추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수립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
2. 중앙추진계획의 추진목표

3. 중앙추진계획의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4. 분야별 실행계획, 필요한 자원 및 그 조달방법
5.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제출받은 국무조정실장은 그 계획을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가기본전략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세부 구성 및 내용,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지방추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수립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추진목표
3. 지방추진계획의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4. 분야별 실행계획, 필요한 자원 및 그 조달방법
5. 그 밖에 지방기본전략 및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과 중앙추진계획과의 조화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의 조화
3. 필요한 자원 및 실현 가능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 지방추진계획에 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해야 한다.

② 시·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에 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협의·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해야 한다.

③ 시·군·구의 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에 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협의·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다른 시·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해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중앙추진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받은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국가 기본전략 및 중앙추진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결과 제출기한 등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법령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절차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령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에 해당 행정계획을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영결과를 국가위원회로 송부해야 한다.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소관 업무에 관한 지표만 해당한다)를 개

발·보급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12조(국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통계청장을 말한다.

②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①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에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며,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위원회의 운영 또는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공개 등)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접수·생산된 자료, 회의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안보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회의) ①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8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국가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군·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가. 국가기본전략과 중앙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다. 국가위원회와의 업무협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가. 지방추진전략과 지방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다.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
속가능발전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3.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과 그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
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28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동향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여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운영) ①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숙의공론화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의 마련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가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숙의공론화장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참가등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숙의공론화장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숙의공론화장의 개최 목적 및 주제

2. 숙의공론화장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숙의공론화장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숙의공론화장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이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숙의공론화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장기 행정계획(제9조제2항 관련)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2.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4.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6.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9.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10.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1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기본계획
13.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14.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 기본계획
1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

계 획

1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17.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19.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2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21.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22. 「산업융합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24.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
2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27.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2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29.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

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3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의 기본계획
3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3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3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35. 「건축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36.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37.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39.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 기본계획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4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4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4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45.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4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49.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5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5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5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 5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 기본계획
- 56. 「주택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기본계획
- 5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 58. 「문화재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
- 5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
- 6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 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 6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 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
- 6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난대 비기본계획
- 6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 6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 획
- 66.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
- 6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6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6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70.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71.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종합대책
72. 「재난안전통신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73.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74. 「조경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기본계획
75. 「주거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7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77.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78.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7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8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81.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8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84.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
85. 「검역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 기본계획
8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8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기본계획
8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8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 기본계획
90.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9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92.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9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94.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9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

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96.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97.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9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빈곤 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99.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1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
101. 「아동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102.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10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104. 「유아교육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1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10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10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1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
10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10. 「점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 1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 1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
계획
- 113. 「청년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 114.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 115. 「평생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11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 11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
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 1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
- 11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
한 기본계획
- 1120.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12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
계획
- 12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1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 12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
한 기본계획

- 1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1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 12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 12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 1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
획
- 130. 「에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
- 132.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 13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
물류발전 기본계획
- 13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 13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
뇨관리기본계획
- 136.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 137.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138.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환경교육계획
139.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14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
른 댐건설장기계획
14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
이용 기본계획
142.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14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
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14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45.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146.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147.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148. 「하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49.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15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15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

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복원 기본계획

15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53.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15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155.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15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15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158. 「농어촌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15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160.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161.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1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163. 「산림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

164. 「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

165.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16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167.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16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169.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170.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 기본계획
17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17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173.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174.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기본계획
175. 「어촌·어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176.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17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179.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18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181.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
18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183.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18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185.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물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
186.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
18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18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기본계획
18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
190.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관리·활용기본계획
19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19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193.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19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195. 「공공외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
19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19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19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19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
2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연 락 처	(044) 200 - 2193